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94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 고 A중중

피 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 4, 5의 법정대리인(친권자부) D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16. 1. 15.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가. 피고 B은 14/28 지분에 관하여,나. 피고 C은 7/28 지분에 관하여,다. 피고 D은 3/28 지분에 관하여 라. 피고 E, F는 각 2/28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부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17. 피고 B 및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 B과 G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지아니하고 있다.

라. G은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으로 피고 C, D, E, F가 있다(피고 D, E, F는 대습상속인).

마. 따라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김선범

별지

부동산 목록

1. 순천시 H 지상 (가동)

시멘트블록조 판넬지붕 사무실 창고 49㎡

2. 위 H 지상 (나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창고 70.56㎡. 끝.